

#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

## 완전계사에 대한 지방세는

## 물어야 하나?

본지는 지금까지 독자의 질문에 대해 서신으로 답변하여 왔으나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계속 오고 있어 이번달부터는 지면을 통해 답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점 알고싶으신것 있으시면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34 월간양계 앞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회신 하겠습니다.

**■** 시군에 따라 같은 완전계사라도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데 어째서 그런지요?

충주시 봉방동 229-2 산지농원 김낙구

**■** 79.9.4 일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거 젖소 한우 육우의 목장용 초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 됩니다.

젖소는 1두당 0.5ha 한우및 육우는 1두당 0.3ha의 범위내에서 면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면제를 받고저 할때는 위의 목장용 초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는 면제신청 없이도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 면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계사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 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 1항 5조에 퇴비사,가축가금사(가축 가금과 그 생산물의 매매의업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방한 퇴비사 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변소 또는 이에 유사한 건축물(개정 76.12.31)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생산물의 매매의업에 공하는 것의 기준을 내무부 지방세과에 문의한바 그 기준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는 규모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